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1.28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01 관세청, 설 명절용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p.1
- 02 관세청, 설 명절 기간 특별지원대책 시행 ... 긴급 수입물품 신속 통관 p.2
- 03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p.3
- 04 유럽, ASEAN 등 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 30곳 지정"수출 플랫폼 역할" p.6
- 05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재심사 통해 적용세율 상향 적용 국내 최초 사례 나와 p.8

1

관세청, 설 명절용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1월 26일 ~ 2월 13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 현장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월 26일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중심으로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31개 세관과 더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해 단속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해 단속할 계획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명절(설, 추석) 특별단속 적발 사례 >

외국산 멸치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제기 및 놋그릇 원산지표시 손상	외국산 도라지 원산지 미표시
		
<p>■ 외국산 멸치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 (2025년 10월)</p>	<p>■ 외국산 제기 및 놋그릇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해 판매하다 적발 (2025년 2월)</p>	<p>■ 외국산 도라지의 원산지를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 (2025년 2월)</p>

(자료 : 관세청)

2 관세청, 설 명절 기간 특별지원대책 시행 ... 긴급 수입물품 신속 통관, 수출기업 자금 부담 경감 지원

2월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명절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 통관·환급금 신청 당일 지급

관세청이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특별 지원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2월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먼저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원부자재 등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 지원팀이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2월 2일부터 18일까지로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수출 기업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된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의 집중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서는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수출기업이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된다. 이때 환급적정성 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나고 실시되며 서류제출은 최소화 한다.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설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 가격은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될 계획이다.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관련 담당부서>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	032-722-4106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032-452-3225
서울세관	수입통관과	02-510-1151
부산세관	통관총괄과	051-620-6111
대구세관	통관지원과	053-230-5210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41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1

② 관세환급 특별지원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032-722-4362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032-452-3325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6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87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053-230-5312
광주세관	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심사과	031-8054-7173

3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관세법」·「환특법」·「관세사법」 시행령 등 관세법령 개정 올해부터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 발급하고 간이정액환급 방식 수시 선택 가능

재정경제부는 오는 2월 말 시행을 앞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담았다. 그 중 관세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3개 법령에 13개 개정안이 포함됐다.

먼저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편의를 위해 납부세액과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기업은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중 선택해야 한다.

제도변경 전에는 관세환급 방식을 한 번 결정하면 2년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수출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는 방식을 수시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에서 개별환급으로 변경할 경우 제한 기간이 폐지되고, 개별환급에서 간이정액환급으로 변경할 경우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축소된다.

● 관세환급 방식 변경 제한 기간 ●

	현행	변경
간이정액환급 → 개별환급	2년	삭제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2년*	1년*

*소요량 계산 곤란 등 사유 시 제한 없음

출처 : 주간 관세무역정보

소액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권 보호의 간소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장이 상표권자, 화주 등에게 침해의심 사실을 통보하면 상표권자는 통관보류를 희망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화주 등은 미침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근거로 세관장은 통관보류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3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관세법」·「환특법」·「관세사법」 시행령 등 관세법령 개정 올해부터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 발급하고 간이정액환급 방식 수시 선택 가능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필요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한 기간에 잠정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결정을 1개월 이내,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 결정 기한 예외도 신설돼 재심사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정을 1개월 연장한 기간 내에 할 수 있게 했다.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를 위해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가 신설됐다.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수입원재료 납부세액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그동안 세관이 발급하던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전산처리설비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 기간은 지정 후 3년이며, 취소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승객예약자료를 항공사 전산시스템 저장 탑승자 정보 21건에 대해 전부 미제출할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승객예약자료 10% 이상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반도체 장비 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기존 3년 이내는 짧은 기간이라는 업계의 애로가 반영된 결과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판정을 위한 체납액 납부비율 계산방식이 변경됐다.

지금까지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비율을 계산했으나,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 초일부터 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비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3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관세법」·「환특법」·「관세사법」 시행령 등 관세법령 개정 올해부터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 발급하고 간이정액환급 방식 수시 선택 가능

관세사의 휴업·폐업 및 사무소 이전·폐지 신고, 통관취급법인 등의 사무소별 1명 이상의 관세사 배치 규정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사의 휴·폐업 및 사무소 이전·폐지 미신고 시 30만원, 통관취급법인 등의 사무소별 1명 이상의 관세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행객이 천재지변이나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구매한 면세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세품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어 출국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을 경우 구매한 면세품을 회수·반품 조치를 해야 해 여행객들과 보세판매장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만 회수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 외에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에 신고인 정보, 위험물품 해당 여부, 담보 정보 및 보세운송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4

유럽, ASEAN 등 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 30곳 지정 "수출 플랫폼 역할"

미·중·일 주력시장부터 ASEAN·중동·중남미까지 시장 다변화 추진

정부가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주요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2026년 '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 30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와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43개 공관 가운데 권역별 수출 증가율과 파급효과, 유망·잠재시장으로의 시장 다변화 가능성, 공관의 사전 준비도와 유관기관 협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공관은 주력시장과 신흥·잠재시장을 고르게 아우른다.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주력시장에 5개소, ASEAN·유럽·중남아시아·중동 등 유망시장에 17개소, 오세아니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잠재시장에 8개소가 지정됐다.

□ 총 29개 국가 및 지역 30개 공관

권역	국가 및 지역	도시	공관명
북미(1)	미국	뉴욕, LA	주미대사관
	중국	베이징, 텐진	주중국대사관
중화권(3)	중국	상하이	주상하이총영사관
	홍콩	홍콩	주홍콩총영사관
일본(1)	일본	도쿄	주일본대사관
ASEAN(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베트남	하노이	주베트남대사관
	싱가포르	싱가포르	주싱가포르대사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태국	방콕	주태국대사관
	필리핀	마닐라	주필리핀대사관
유럽(7)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주루마니아대사관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주룩셈부르크대사관
	벨기에	브뤼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주NATO대표부
	영국	런던	주영국대사관
	체코	프라하	주체코대사관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대사관	
중남아시아(2)	러시아	모스크바	주러시아대사관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알마티총영사관
중동(2)	UAE	아부다비, 두바이	주UAE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오세아니아(2)	뉴질랜드	웰링턴	주뉴질랜드대사관
	호주	멜번	주호주연방대사관 멜번분관
중남미(4)	멕시코	멕시코시티	주멕시코대사관
	브라질	상파울루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칠레	산티아고	주칠레대사관
	페루	리마	주페루대사관
아프리카(2)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케냐	나이로비	주케냐대사관

출처 : 농식품부, 외교부

4

유럽, ASEAN 등 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 30곳 지정 "수출 플랫폼 역할"

'중국 수소산업 생태계와 우리기업 협력 방안' 보고서 발간 ... 중 수소산업 협력 유망분야 및 진출 시 유의점 제시

K-푸드 거점공관은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현지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공관은 관할 지역의 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바이어·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지 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또 비관세장벽과 식품 관련 규제, 소비 트렌드 등 실무적인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통관·검역 애로 해소와 위조·모방품 대응, 현지 유통망 발굴을 지원한다.

현지 유력 인사와 인플루언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K-푸드 홍보 활동도 공공외교와 연계해 추진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K-푸드 거점공관은 정부의 K-이니셔티브 기조 아래 경제와 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역량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K-푸드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로 이어지는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정된 공관의 80% 이상이 ASEAN·유럽·중동·중남미 등 유망·잠재시장에 위치해 K-푸드 수출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애로 해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K-푸드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문화·뷰티·패션 등 다른 분야의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융복합 마케팅도 강화해 K-푸드의 글로벌 도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재심사 통해 적용세율 상향 적용 국내 최초 사례 나와

중국산 PET필름 2개 업체 덤핑방지관세 각각 5.11%p, 33.14%p 인상 결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재심사를 통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월 26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에 적용세율을 인상은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다.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란 덤핑방지조치 시행 이후 그 내용 변경이 필요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재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도로 「관세법」 제5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으나,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업체 중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었다.

이에 코로롱인더스트리(주) 등 국내 기업은 2025년 2월 재경부에 재심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같은해 12월 세율 인상을 재경부에 건의해 덤핑방지관세 적용세율을 상향하게 됐다.

재경부는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속한 시정 조치”라고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캄웨이 및 그 밖의 관계사,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재경경제부령 시행일부턴 각각 기존 2.2%, 3.84%에서 7.31%, 36.9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심사 조치 내용>

번호	적용 업체	현행 덤핑방지 관세율(A)	변경 관세율(B)	인상폭 (B-A)
1	캄웨이 및 그 밖의 관계사	2.2%	7.31%	5.11%p
2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4%	36.98%	33.14%p

(자료 : 관세청)

(자료 : 관세청)

재경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로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